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(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번호	2471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2. 2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## 1. 제안이유

2024년 11월 별하 어린이집(가칭) 준공 및 금천G밸리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예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신규 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,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추진근거

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, 제14조, 제17조

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## 3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연번	시설현황				위탁체 선정	비고
	시설명	소재지	규모	보육 정원		
1	(가칭)별하 어린이집	시흥대로149가길 22(가산동)	697㎡ (지하1~지상3층)	70 (예정)	5월	-
2	금천G밸리어린이집	두산로 70 (독산1동)	297.52㎡	49	5월	-

나. 주요 위탁내용

1) 위탁기간 : 5년

2) 위탁업무

가)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

나)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

(교육·영양·건강·안전·부모에 대한 서비스·지역사회와의 교류)

다) 운영시스템(CCTV등), 어린이집 관련 서류, 개인정보처리업무 등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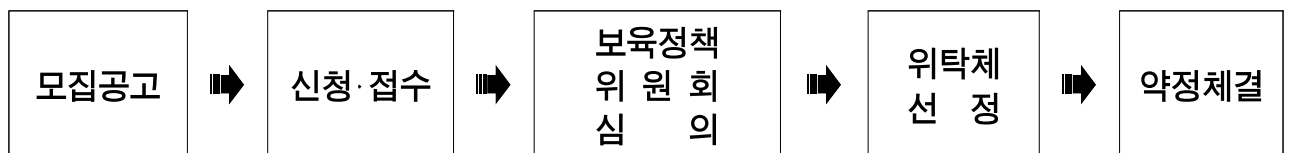
다. 위탁체 선정방법 및 절차

1)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: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선정

< 신규위탁 심사기준 >

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-2
- 보건복지부 【위탁체(신규·변경) 선정관리 표준안】
- 보건복지부 【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(신규·변경) 공통심사 기준표】
- 보건복지부 【위탁심사(신규·변경)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】

2) 선정절차

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1)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

2) 구립어린이집의 책임성 있는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

마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무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며, 현재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- 2) 민간위탁 시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, 어린이집연합회 간 네트워크 운영이 강점이 됨

#### **4. 관계법령**

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, 제14조, 제17조

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# 관 계 법 령

## 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

**제13조(위탁운영)**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결정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1.3.18, 2014.12.30., 2021.11.16>

**제14조(위탁계약)**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이 끝나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끝나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1.16.>

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끝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,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위탁할 수 있다.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개정 2014.12.30., 2021.11.16.>

④ 재위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

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, 2021.11.16.>

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알리되,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1.11.16.>

**제17조(위탁기간)**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재위탁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1.16> [전문개정 2020.12.31]

### 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**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개정 2016.7.1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<개정 2016.7.18.>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<개정 2016.7.18.> [전문개정 2020.7.17]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 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수탁자 선정방식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[본조신설 2020.7.17]